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26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우체국쇼핑 고객 거점 시범사업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쇼핑 고객 거점사업’ 시험적 실시

1. 개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우체국쇼핑 공급 장애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체국쇼핑 고객 거점사업”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예외 적용

2. 주요내용

가. 대상물품 : 제주지역 우체국쇼핑 상품

나. 접 수 국 : 제주지방우정청 제주우체국

다. 서비스 내용

- 제주도 우체국쇼핑 상품을 고객거점인 수도권의 3PL 물류창고에 사전 입고하고 고객이 주문 시 물류창고에서 상품발송(물류창고→우편집중국)

부 칙

이 공고는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